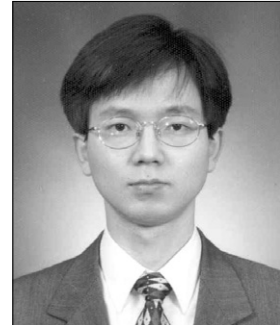


# 근로빈곤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

*Trends and Poverty Dynamics of the Working Poor*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율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율은 10%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취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긴 하지만,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근로에 고착화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취업 촉진만이 아니라 공식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제기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1. 근로빈곤의 추이

근로빈곤은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만, 가구 단위의 '빈곤'과 개인 단위의 '근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기준은 없다. 연구자마다 연구 목적과 정책적 지향, 활용 자료의 정보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활용하고 있는데,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쟁점은 근로빈곤 측정 단위를 가구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이다.

근로빈곤을 가구 단위로 정의하는 예는 가구

주가 근로연령(18~65세)이면서 한 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빈곤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중으로 정의하는 OECD(2008, 2009)에서 찾을 수 있다.<sup>1)</sup> 가구 단위의 접근(household-based approach)은 아동·장애인 등 요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의 특성이나 가구의 노동공급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근로빈곤 정의는 취업 촉진 우선 정책(work-first strategy)이나 가구내 취업자수 증가 정책(boosting multi-earnership) 지향을 강하게 띤다. 개인 단위의 근로빈곤 정의에 비해 취업자가 없던 가구에서 취업자가 생기면 취업에 따

1)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2009), "Is Work the Best Antidote to Poverty?", Employment Outlook, Geneva: OECD.

른 빈곤 탈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취업 촉진 우선 정책의 근거가 되며, 한 명의 성인만 일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많으면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은 가구내 취업자수 증가 정책의 근거가 된다.

반면 개인 단위의 접근(individual-based approach)에서 근로빈곤층이 겪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경험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를 낮은 임금률, 적은 근로시간, 반복적인 실직 등의 노동시장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가구 구성이나 가구내 노동공급 등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요인들은 개인의 근로빈곤 위협에 영향을 미칠 때만 고려하게 된다. 개인 단위의 접근은 취업이 빈곤 위협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취업만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충분하지 않음을 밝히는데 유효하다.

둘째 쟁점은 가구 빈곤에 대한 정의이다.

가구 빈곤 판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①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소득과 소비 가운데 어느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② 소득 빈곤으로 한정할 때, 시장소득·경상소득·가처분소득 가운데 어떤 소득을 사용할 것인지, ③ 빈곤선을 절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 기준으로 할 것인지, ④ 가구 니즈의 차이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할 때에도 새롭게 제기되는 세 번째 쟁점은 개인의 ‘근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이다.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근로빈곤의 정의를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Pena-Casas and Latta(2004)에 따르면, ‘근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취업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경제활동인구(미국, 프랑스, 호주)로 확장하거나 취업자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간 취업기간(미국, 프랑스), 근로시간, 연간 가구원들의 총 근로시간 등의 다양한 취업강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sup>2)</sup> 결국 근로에 대한 정의는 크게 취업 지위와 기간(status and duration of employment)을 어떻게 고려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빈곤 가구의 구성원 중 연간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며, 유럽연합 통계처(Eurostat)는 ‘지난 1년 동안 7개월 이상 취업한 자’로 정의하여 유럽 각국의 근로빈곤을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취업자가 있는 빈곤한 가구로 정의하여 가구 단위의 접근을 하는 연구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개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주로 근로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근로연령 여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 가장 광의의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층

2) Pena-Casas, R. and M. Latta(2004).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working-aged poor)이다. 이병희(2010)는 가구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율을 제시하고 있다.<sup>3)</sup>

둘째, 근로능력 빈곤층(workable poor)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선진국에서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반영한 정의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을 드나들며 취업과 미취업간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층 정의가 한계를 가지고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아동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간주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라는 특정한 정책적 지향에 편향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sup>4)</sup> 또한 근로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특정한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빈곤층을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경우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이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취업자는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응답하는 비

중이 높다는 점<sup>5)</sup>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한 근로빈곤층 정의이다. 홍경준(2005)은 '6개월간 경활 빈곤층'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능력과 경제활동기간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빈곤 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한 자로 정의한다.<sup>6)</sup> 이러한 정의는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패널자료에서만 개념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1년간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 정의이다. 이병희(2010)는 근로능력 빈곤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여부로 '취업경험 빈곤층'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통계청의 정의와 동일하다. 이는 경제활동기간을 고려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취업경험 빈곤층을 '내내 취업빈곤층'과 '부분 취업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낮은 임금률로 인한 취업빈곤이므로 근로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대상이며, 후자는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정책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율을 네 가지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3) 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pp.93~116.

4)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5)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경제발전연구, 15(1), pp.69~93.

6) 노대명 외(2007)는 빈곤 가구 구성원 중 지난 1년간 취업기간이 7개월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노대명 · 황덕순 · 유진영 · 이은혜 · 원일(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 자료를 개인 단위의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빈곤선은 상대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가구 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개인의 비중으로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첫째, 근로능력 빈곤율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근로능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재학 중·군복무 중·중증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다.

둘째, 연말 기준의 취업자 가운데 빈곤 상태

에 있는 개인의 비중으로 정의되는 취업빈곤율이다.

셋째,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이다. 연간 경제활동 정보에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로 취업경험 여부를 판별하였다.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은 연말 기준의 취업 빈곤율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유급 근로(paid work)만을 포착하고, 연말 취업자로 응답하였음에도 연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지 않은 표본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의 취업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넷째,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인데,

표 1. 근로빈곤 관련 지표의 추이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 장 소 득	빈곤율	0.204	0.205	0.195	0.196	0.185
	근로능력 빈곤율	0.142	0.132	0.121	0.128	0.120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101	0.095	0.088	0.083	0.086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91	0.098	0.091	0.096	0.094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80	0.077
경 상 소 득	빈곤율	0.170	0.169	0.162	0.156	0.143
	근로능력 빈곤율	0.120	0.109	0.098	0.099	0.092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092	0.083	0.072	0.066	0.066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83	0.084	0.075	0.077	0.073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63	0.059
가 처 분 소 득	빈곤율	0.163	0.162	0.154	0.152	0.135
	근로능력 빈곤율	0.115	0.106	0.097	0.099	0.088
	연말 시점 취업 빈곤율	0.088	0.080	0.072	0.064	0.062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	0.080	0.080	0.074	0.074	0.070
	연간 7개월 이상 취업경험 빈곤율				0.062	0.055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일한 개월수를 조사한 4차년도 자료이후에만 추정이 가능하다. 주된 활동상태를 질문한 Eurostat와 달리,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중복 응답을 허용하고,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빈곤율 지표는 통계청 공표 통계와 달리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간 취업경험 빈곤율은 다소간 변동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

## 2. 근로와 빈곤의 동태적 변화

취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데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업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취업촉진 우선정책(work-first policies)만으로 근로빈곤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비공식 근로(informal work)로 정의하여, 빈곤층이 경험하는 비공식 근로의 특성과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공식 근로는 공적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 표본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인 18~59세로 한정하였다.

<표 2>에는 비공식 취업률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자 가운데 비공식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1%에서 2009년 38.4%로 약간 감소하였다. 비공식 취업률의 소폭 감소는 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빈곤층의 비공식 취업률은 비빈곤층의 그것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59세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우하는 두 해 동안 모두 조사된 개인들을 결합하여 '연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표 3>에 연간 이행 확률을 제시하였다.

비공식 근로가 1년 후에도 비공식 근로를 유지할 확률은 73.9%에 이르며, 공식 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15.0%에 그친다. 그리고 비공식 근로가 1년 후에 비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11.1%로, 공식 근로의 5.2%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여

표 2. 빈곤 여부별 비공식 취업률 추이(18~59세 취업자)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0.411	0.399	0.416	0.386	0.384
비빈곤	0.377	0.364	0.381	0.358	0.354
빈곤	0.764	0.782	0.834	0.739	0.739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원자료

비공식 취업자의 실직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취업자가 1년 후 비공식 근로로 취업할 확률은 15.4%로, 공식 근로로 취업할 확률 8.3%에 비해 높다. 즉,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되거나 실직 위험이 높아서 ‘비공식 ↔ 비취업 순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 여부별로 보면, 비공식 근로에 종사하는 빈곤층이 공식 근로로 전환할 확률은 9.5%로, 비빈곤층의 16.0%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비공식 취업자가 1년 후 비취업 상태로 전환할 확률도 빈곤층이 13.5%로, 비빈곤층의 10.6%에 비해 높다. 그리고 비취업자가 비공식 근로로 전환하는 확률은 빈곤층이 21.1%로, 비빈곤층의 14.1%에 비해 높다. 이는 빈곤층의 비공식 근로 고착화와 실직 위험이 높음을 보여준다.

비공식 근로의 경험(incidence)과 지속(persistence) 문제를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

기 위하여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장기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59세 개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조사연도에 조사되고, 최소한 한 해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결합하여 ‘전체 연결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4>에서 5년 동안 취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초기 시점의 일자리 특성별로 비공식 근로 경험과 지속을 살펴보았다.

우선 1차년도 비공식 취업자의 38.9%만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공식 근로를 경험하며, 오히려 비취업자의 공식 근로 경험이 41.3%로 높게 나타나, 비공식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직 경험은 비공식 취업자가 28.0%로 공식 취업자의 15.0%에 비해 높다.

한편 5년간 누적 경험기간을 보면, 비공식 취업자는 5년간 3.6년의 비공식 근로경험을 기록

**표 3. 일자리 특성별 · 빈곤 여부별 1년 후 일자리 특성의 변화(15~59세 근로능력자)**

(단위: %)

빈곤 여부	t+1		열 백분율(연간 이행행렬)		
	t		공식	비공식	비취업
전체	공식		88.4	6.5	5.2
	비공식		15.0	73.9	11.1
	비취업		8.3	15.4	76.2
비빈곤	공식		88.7	6.3	5.0
	비공식		16.0	73.3	10.6
	비취업		8.4	14.1	77.5
빈곤	공식		77.1	12.5	10.4
	비공식		9.5	77.0	13.5
	비취업		8.2	21.1	70.7

자료 :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간 패널자료

하여, 비공식 취업자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비공식 취업자의 비취업 경험기간은 0.5년에 불과하여, 높은 실직 위험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성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비공식 취업자의 41.8%는 5년 동안 비공식 근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발견은 비공식 근로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단기간 가입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보험으로의 배제 때문에 실직 위험이 높더라도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 빨리 복귀하는 성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빈곤 탈출의 주요한 경로는 취업 상태로의 전환이지만,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은 경로는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전환하였을 때이다. <표 5>를 보면, 빈곤 탈출률은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였을 때 76.8%, 비공식 취업자가 공식

일자리로 전환하였을 때 76.4%, 비취업자가 공식 일자리를 획득하였을 때 66.4%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비빈곤층이 다음 해에 빈곤 상태로 전환하는 확률은 실직하였을 때 가장 크며, 이어서 비공식 일자리로 전환하였을 때이다.

실직 위험이 높은 비공식 취업자는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재빈곤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이병희(2010)의 빈곤 유형화 방식에 따라 5년간의 빈곤 이력 정보를 구성하여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 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빈곤무경험층(the persistent non-poor)을 구분하고, 빈곤경험층은 해당 기간중 1년만 빈곤을 경험한 계층을 일시 빈곤(the transient poor), 1번 이상 빈곤했으면 매회당 빈곤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반복빈곤(the recurrent poor), 최소한 연속된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the persistent poor)로 분류하였다. 이 때 빈곤 시작시기 또는 빈곤 종료

표 4. 비공식 근로 경험과 지속(15~59세 취업경험자)

(단위: %, 년)

구분		공식 근로	비공식 근로	비취업	전체
5년간 경험 여부 (비중)	공식 근로	1.000	0.389	0.413	0.688
	비공식 근로	0.191	1.000	0.762	0.568
	비취업	0.150	0.280	1.000	0.344
5년간 누적 경험기간 (년)	공식 근로	4.4	0.9	0.9	2.6
	비공식 근로	0.4	3.6	1.6	1.7
	비취업	0.2	0.5	2.5	0.7
5년간 지속 경험 (비중)	공식 근로	0.706			0.341
	비공식 근로		0.418		0.143

주: 일자리 특성 분류는 2005년 기준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전체 연결패널자료.

표 5. 일자리 특성 변화별 빈곤 상태의 변화(15~59세 근로능력자)

(단위: %)

구분	비빈곤→비빈곤 A	비빈곤→빈곤 B	빈곤→비빈곤 C	빈곤→빈곤 D	빈곤 유입률 B/(A+B)	빈곤 탈출률 C/(C+D)
공식→공식	95.8	1.6	2.0	0.6	1.6	76.8
공식→비공식	87.9	6.3	3.4	2.3	6.7	59.9
공식→비취업	80.9	13.1	1.6	4.4	13.9	26.8
비공식→공식	87.3	2.9	7.5	2.3	3.2	76.4
비공식→비공식	78.0	5.8	6.8	9.4	7.0	41.9
비공식→비취업	68.3	12.7	6.2	12.8	15.7	32.6
비취업→공식	76.1	5.5	12.2	6.2	6.7	66.4
비취업→비공식	67.9	6.5	12.0	13.7	8.7	46.6
비취업→비취업	76.3	6.3	5.6	11.8	7.6	32.3
전체	84.5	4.6	4.8	6.1	5.1	44.2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연간 패널자료.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좌측 또는 우측 절단(left or right censoring)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6>에는 비공식 근로 여부별로 빈곤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취업경험자 가운데 분석대상인 5년 동안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계층은 23.9%로 나타난다. 빈곤경험층의 구성을 보면, 취업경험자의 특성상 한 해만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빈곤을 반복하거나 경험하거나 연속된 2년 동안 빈곤을 경험한 반복빈곤, 연속된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 순으로 나타난다.

1차년도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공식 취업자가 5년 동안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비중은 11.9%인데 비해, 비공식 취업자는 33.7%, 비취업자는 37.8%에 이른다. 또한 공식 취업자는 빈곤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빈곤의 특성을 가지는 반면, 비공식 취업자와 비취업자는 상대적

으로 반복빈곤과 지속빈곤의 비중이 높다. 흥미로운 것은 비취업자의 빈곤 경험률이 비공식 취업자에 비해 다소 높지만, 빈곤 유형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두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비공식 근로와 비취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빈곤 유형별로 5년간의 누적 경험기간을 보면, 빈곤 경험층은 비공식 근로를 2.5년, 공식 근로를 1.3년, 비취업을 1.2년 경험한다. 빈곤 유형별로 보면, 연속된 3년 이상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집단에서도 비공식 근로가 3.0년에 이르며, 비취업은 1.4년에 그친다. 반복 빈곤층에서도 비공식 근로(2.5년)와 비취업(1.3년)을 합하여 3.8년에 이른다. 즉 빈곤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계층에서 비공식근로와 짝은 실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비공식 근로와 빈곤 유형(15~59세 취업경험자)

(단위: %, 년)

구분		빈곤무경험	빈곤경험			전체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전체		76.1	23.9 [100.0]	12.0 [50.2]	6.4 [26.8]	5.5 [23.0]	100.0
2005년 일자리 특성	공식근로	88.1	11.9 [100.0]	8.0 [67.0]	2.6 [21.4]	1.4 [11.6]	100.0
	비공식근로	66.3	33.7 [100.0]	15.2 [45.0]	9.5 [28.2]	9.0 [26.7]	100.0
	비취업	62.2	37.8 [100.0]	16.9 [44.7]	10.9 [28.9]	10.0 [26.4]	100.0
5년간 누적 경험기간	공식근로	2.9	1.3	1.8	1.2	0.6	2.6
	비공식근로	1.5	2.5	2.2	2.5	3.0	1.7
	비취업	0.6	1.2	1.0	1.3	1.4	0.7

주: [ ]은 빈곤경험층 대비 구성비중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전체 연결패널자료.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 경향이 높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고 공식 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

로써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본문  
복기**

7) 이병희(2011).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3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 2011.10.13.